

불법사금융 피해상담·신고 안내



불법사금융이란?



법정최고이자율(연20%)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

- 100만원 대출, 매일 11,000원씩 100일 동안 상환 : 연 36.5% (법정이자율 초과)



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없이 대부·대부중개·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

- 대부업 등록없이 하는 대부 관련 모든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임



불법사금융 확인방법

● 불법사금융 업체로 의심된다면 ?

→ 네이버, 다음 등 포털사이트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, 대부금융협회 누리집(www.clfa.or.kr)에서 “등록 대부업체 조회”로 검색하여, 업체명 등으로 조회

● 최고금리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면 ?

→ 금융감독원 누리집 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(fine.fss.or.kr)에 접속, 서민·중소기업 / 서민금융1332 / 불법금융대응 / 이자계산기 메뉴에서 조회



피해신고 방법

☎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: ☎ 02-2133-8840,8844

- 방 문 :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(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대부업수사팀)

- 온라인 : <https://news.seoul.go.kr>(서울시청 누리집)

☎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: 불법 대부업 신고

☎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: ☎ 1600-1700 (단축번호 4)

- 방 문 : 상담센터 (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)

- 온라인 : <https://sftc.seoul.go.kr>

☎ 서울시 다산콜센터 : ☎ 120